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옥상녹화 사업 추진시 지원에 대한 조례로서, 제11조에서는 옥상녹화의 유지·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옥상녹화는 기존 건물에 조성할 경우,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 옥상부의 누수, 균열 등의 안전위험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안전위험 사항에 따라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안전 진단 후 옥상녹화를 전면 제거하거나 일부를 제거하여 방수공사나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5년간의 협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시비를 지원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의 제거 및 축소에 대해서 시·구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옥상녹화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.(안 제11조제5항)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